

[별표 3]

신제품 지정서 재발급시의 구비서류(제14조제1항 관련)

구 분	구 비 서 류
분실·소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분실·소실 사유서(대표자 명의) 1부
소재지·대표자·회사명 등의 기재사항 변경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(기타 소재지 변경확인 가능한 것) · 신제품 지정서(국문·영문) 원본 ·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
회사유형변경 (법인전환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· 신제품 지정서(국문·영문) 원본 ·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· 기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
회사합병으로 기재사항 변경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(합병 내용 확인이 가능한 것) · 합병 공중계약서 사본 1부(시설, 인원 및 특허권 등에 관한 사항 포함) · 폐업사실증명원 사본 1부(지정받은 기업이 폐업한 경우) · 신제품 지정서(국문·영문) 원본 ·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
사업의 일괄 양도·양수로 기재사항 변경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사업 일괄양도·양수계약서 사본 1부 (시설, 인원, 특허권, 지정에 행하여진 처분 등에 관한 사항 포함) ·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· 신제품 지정서(국문·영문) 원본 ·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· 기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